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65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이만희·이종배·김소희

김기웅 · 조은희 · 구자근

서천호 · 김상훈 · 김예지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 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 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회의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회의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제8조(적용 배제) ①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	
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	,
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4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u><단서 신</u>	<u>다만, 집회의</u>
<u>설></u>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
	는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
	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	5
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u><단서 신</u>	<u>다만, 집회의</u>
<u>설></u>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
	는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

	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